

## EU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s): 2007년-2013년

변필성\*

**요약:** 유럽연합(EU)은 EU의 조화로운 발전을 진흥시킨다는 목적하에, 경제·사회적 결속을 강화시키고자 하며, 특히 지역 격차를 축소시키고 저발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1994년부터 구조기금을 집행해 왔다. 2006년 7월 EU의 최고의 결기구인 EU 정상회의는 EU 집행위원회의 발의와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쳐 2007년-2013년의 기간에 적용될 구조기금의 규정을 확정하였다. 이에 본고는 2007년-2013년 구조기금의 특징을 기금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 그러한 목표가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 구조기금의 회원국 간 할당 및 재정수단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주요어:** 결속, 유럽연합, 구조기금

### 1. 머리말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라 칭함)은 유럽공동체 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이하 Treaty라 칭함)의 제158조<sup>1)</sup>에 의거해서 EU의 조화로운 발전을 진흥시킨다는 목적 하에, 경제·사회적 결속(cohesion)을 강화시키고자 하며, 특히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키고 저발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해오고 있다. 그러한 EU 정책의 수단 중 중요한 것이 Treaty 제159조<sup>2)</sup>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이다. 구조기금은, EU 창설의 근간으로서 1992년에 체결된 유럽연합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에 의거해서 1994년부터 집행되어오고 있다. 1994년-1999년의 기간에 제1라운드가, 그리고 2000년-2006년 기간에

제2라운드가 집행되었다.

그런데 2006년 7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발의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동의를 거쳐 EU 정상회의(the Council of European Union)<sup>3)</sup>가 Treaty 제161조에 의거해서 2007년에서 2013년까지의 기간(제3 라운드)에 적용될 구조기금의 규정을 확정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2006).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총 다섯 가지로 나뉜다.

- ① 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 구조기금에 재정자원을 제공하는 세 가지 기금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uropean Social Fund, Cohesion Fund)의 집행을 위한 기본 원칙, 규칙, 기준을 제시한다.
- ② Regulation (EC) No. 1080/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이하 ERDF라 칭함)

의 목적과 지원 대상 등 ‘을’로 수정 규정한다.

- ③ Regulation (EC) No. 1081/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European Social Fund(이하 ESF라 칭함)의 목적과 지원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④ Council Regulation (EC) No. 1084/2006: 결속기금(Cohesion Fund)의 목적과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한다.
- ⑤ Regulation (EC) No. 1082/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U 내에서 이루 어질 접경지역(cross-border) 협력, 국가 간의(trans-national) 협력, 지역 간의(inter-regional) 협력을 전개하기 위한 법적 기구인 European Grouping of Territorial Co-operation(이하 EGTC라 칭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본고는 이상의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2007년~2013년에 적용될 EU 구조기금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해당 구조기금의 목표(objectives), 그러한 목표가 적용될 지역 및 국가의 자격요건, 구조기금의 회원국 간 할당 및 재정자원에 초점을 맞춘다. 필요한 경우, 2000년~2006년 구조기금과의 비교를 수행한다.

## 2. 구조기금의 목표

2007년~2013년 기간에 집행될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Convergence: 저발전 지역 및 국가의 개발을 통해 지역 간 또는 국가 간 격차를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대상 지역 및 국가에서 물리적 자본 및 인적 자본 투자의 질적 개선,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 및 혁신 창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환경 보호 및 개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조건을 개선한다(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의 제3조 2항 (a)).

- ②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이하 RCE라 칭함): Convergence 목표가 적용되는 지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경쟁력, 매력도(attractiveness), 고용을 증대시킨다. 이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의 질적 제고, 지식기반 경제의 진흥 및 혁신창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장려, 환경 보호 및 개선, 접근성 개선, 노동자 및 기업의 적응력(adaptability) 제고, 개방적 또는 사회 통합적(inclusive) 일자리 시장 구축 등을 수행한다(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의 제3조 2항 (b)).
- ③ 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이하 ETC라 칭함): 접경지역 협력, 국가 간의 협력, 지역 간의 협력 및 정보교환·지역개발 경험 공유를 강화하고자 한다(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의 제3조 2항 (c)).

2007년~2013년 구조기금은 이상과 같이 세 개의 목표로 구성된다. 반면 2000년~2006년 구조기금은 세 개의 목표(Objective 1, 2, 3)와 네 개의 커뮤니티 이니셔티브(Community Initiative, 즉 INTERREG Ⅲ, URBAN Ⅱ, EQUAL, LEADER+)를 포괄했다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atlas/factsheets/pdf/fact\\_eu25\\_en.pdf](http://ec.europa.eu/regional_policy/atlas/factsheets/pdf/fact_eu25_en.pdf)). 그런데 네 개의 이니셔티브는 세 개의 목표를 보완했다고 볼 수 있으며, 추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세 개의 목표와 공유되는 부분이 있었다.

2007년~2013년 구조기금 목표와 2000년~2006년 구조기금의 목표와 커뮤니티 이니셔티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2006년 구조기금의 Objective 1은 저발전 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이므로, 2007년~2013년 구조기금의 Convergence 목표와 비슷하다.

둘째, Objective 2는 산업집적지역, 도시, 농촌, 그리고 어업에 의존하는 지역 등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구조조정을 추구하므로 Convergence 목표의 일

부분(즉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Objective 3은 인적 자원 투자 및 교육훈련, 노동자의 시장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고용기회 증대, 개방적 및 사회 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Objective 3은 대체로 2007년~2013년 구조기금 RCE 목표의 고용 내용과 연관된다.

넷째, 2000년~2006년 구조기금의 커뮤니티 이니셔티브로서 ERDF로부터 지원을 받는 INTERREG III는 EU 내 접경지역 협력, 국가 간 협력, 지역 간 협력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2007년~2013년 기간의 ETC라는 목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TC는 재정적으로 ERDF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EU내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협력을 위한 EGTC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082/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다.

다섯째, URBAN II는 ERDF에 바탕을 두고 있던 커뮤니티 이니셔티브로서 도시 및 균형주구의 사회·경제적 재생과 그에 대한 지역 및 도시 간의 경험·지식의 공유 제고라는 목표를 추구하였다. 지역 및 도시 간의 경험·지식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ETC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EQUAL과 LEADER+는 각각 ESF와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의 지원을 받던 이니셔티브로서 노동시장 내 균등(equality)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는 RCE 목표의 고용 내용과, 후자는 Convergence 및 RCE 목표 내용의 일부(즉 환경보호 및 개선)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007년~2013년의 구조기금은 2000년~2006년의 구조기금의 목표와 커뮤니티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즉 저발전 지역 개발 및 지역격차 완화, 지역의 경제·사회적 구조조정, 고용 창출 및 고용조건 개선, 지역 간 협력 등을 계승하면서 Convergence,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이라

는 세 개 목표로 통합시켰다. Convergence는 저발전 지역 및 국가의 개발을 통해 지역 간 또는 국가간 격차를 완화시키고, 해당 지역 및 국가에서의 성장과 고용의 조건을 개선한다. RCE 목표는 Convergence 목표가 적용되는 지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경쟁력, 매력도(attractiveness), 고용 증대를 추구한다. ETC 목표는 접경지역 협력, 국가 간의 협력, 지역 간의 협력 및 정보교환·지역개발 경험 공유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2007년~2013년 구조기금의 중요한 특징은, Convergence 목표와 RCE 목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 성장, 경쟁력을 목표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EU의 전략적 목표(strategic goal)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고용의 양적·질적 증가, 그리고 사회적 결속을 달성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라고 2000년에 설정한 리스본 아젠다(Lisbon Agenda)<sup>4)</sup>가 EU의 지역정책에 연계되는 메커니즘이 없다는 지적(Bachtler et al. 2003)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EU는 리스본 아젠다의 달성이 부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해당 아젠다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2월에 ‘성장과 고용의 동시 추구(Growth and Jobs)’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5/130&format=HTML&aged=1&language=EN&guiLanguage=en>). 더 나아가 해당 전략을, 회원국별 2007년~2013년 구조기금 집행을 위한 수단인 전략 프레임워크(national strategic reference framework) 및 실천 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me)의 수립에 관한 EU 차원의 전략 가이드라인(Community strategic guidelines on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에도 반영시켰다 (Council Decision of 6 October 2006 on Community strategic guidelines on cohesion).

요컨대, 2007년~2013년의 구조기금은 EU의 경제·사회적 결속 강화를 통한 조화로운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역 간 격차 완화 및 저발전 지역의 개발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저발전지역을 포함

한 모든 지역의 고용 창출, 성장,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도 추구하며, 그리고 국가 간 및 지역 간 협력도 추구함을 알 수 있다.

### 3. 구조기금의 목표 적용 대상 지역 및 국가

본 절에서는 2007년~2013년의 구조기금 목표가 적용되어 관련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 및 국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Convergence 목표 적용 대상 지역 및 국가

Convergence 목표가 적용되는 대상 지역 및 국가는 다음과 같다.

- ① Convergence Region: 유로(euro)화의 국가별 가치를 반영하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로 측정된 1인당 GDP(2000년~2002년 3개년 평균)가 EU 25개국 평균(2000년~2002년 3개년 평균)의 75% 미만인 NUTS-2 지역<sup>5)</sup>(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 제5조 1항)
- ② Phasing-out Region: EU 15개 회원국(2004년 이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1인당 GDP가 EU 평균의 75%미만이지만, 25개국으로 EU가 확대됨으로써 EU 평균이 하락되어 1인당 GDP가 EU 25개국 평균의 75%미만이 되지 않아 Convergence 목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NUTS-2 지역도 Convergence 목표의 대상이 된다(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 제8조 1항).
- ③ PPP로 측정된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 2001년~2003년 3개년 평균)가 EU 평균의 90%미만인 국가와 Treaty 제104조에 제시된 경제적 수렴(economic convergence)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유한 국가는 Convergence 목표에 자금을 제공하는 기금들 중 하나인 결속기금의

지원 대상이 된다(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 제5조 2항). 결속기금을 지원받는 국가의 자격은 2010년에 EU 25개 회원국의 1인당 GNI 평균을 토대로 다시 검토될 것이다(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 제5조 3항).

- ④ EU 15개 회원국(2004년 이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1인당 GNI가 EU 평균의 90%미만이지만, 25개국으로 EU가 확대됨으로써 EU 평균이 하락되어 1인당 GNI가 EU 25개국 평균에 90%미만이 되지 않아 Convergence 목표 하에서 결속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국가의 경우 경과조치로서 2007년~2013년 기간 동안 Convergence 목표가 적용된다(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 제8조 3항).

이상의 지역 및 국가는 Convergence 목표에 자금을 제공하는 기금(ERDF, ESF, 결속기금)으로부터 지원금을 할당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7년~2013년 기간의 EU 구조기금에서는 결속기금이 2000년~2006년 기간에서처럼 별도로 집행되지 않고 구조기금에 흡수되어 Convergence 목표 하에 집행되는 기금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EU 회원국 25개국을 대상으로 구조기금(2007년~2013년)의 Convergence 목표가 적용되는 지역(Convergence region과 Phasing-out region)의 공간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 2) RCE 목표 적용 대상 지역

RCE(Regional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목표가 적용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①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Region: Convergence 목표가 적용되는 지역 이외의 지역(국가 아님)에는 RCE 목표가 적용된다. EU의 각 회원국은 회원국별로 할당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 프레임워크인 NSRF(national strategic

reference framework)를 제출할 때, RCE 목표 하에서 ERDF로부터 지원받을 지역이 NUTS-1인지 또는 NUTS-2인지를 명시해야 하며, 또한 국가별 기금 활용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 (operational programme)이 ESF로부터 지원받을 경우에는 적절한 공간단위 수준을 각 회원국이 선정해야 한다(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 제6조와 제35조 2항).

- ② Phasing-in Region: 2000년~2006년 기간에 Objective 1의 적용 대상이었던 NUTS-2 지역으로서 PPP로 측정된 1인당 GDP(2000년~2002년 3개년 평균)가 기존 15개 EU 회원국(2004년 이전) 평균의 75%를 초과할 경우, 경과조치로서 해당 지

역을 RCE의 목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설정한다 (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 제8조 2항).

이상의 지역은 RCE 목표에 재원을 제공하는 ERDF 와 ESF로부터 지원금을 할당받으며, 해당 지역의 공간분포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 3) ETC 목표 적용 대상 지역

ETC(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목표가 적용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접경지역 협력(cross-border cooperation)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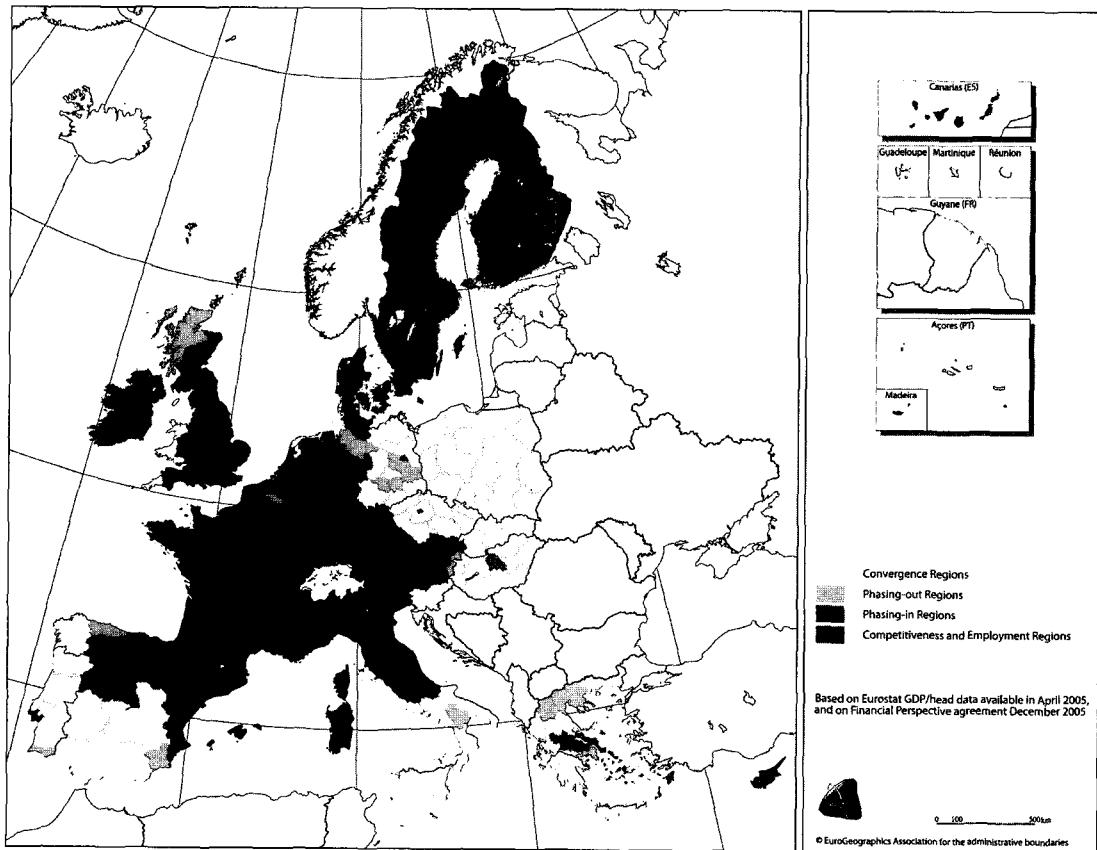


그림 1. Convergence와 Regional Competitiveness & Employment 목표가 적용되는 지역(2007년~2013년)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06)

육지경계를 따라 위치한 NUTS-3 지역과 해양경계(국가 상호 간에 보통 150km 이하로 떨어져 있는 해양에 설정된 경계)를 따라 위치한 모든 NUTS-3 지역을 포함한다(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 제7조 1항).

- ② 국가 간 협력(transnational cooperation)의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 제103조 2항에 규정된 절차에 맞춰 프로그램별로 구분해서 대상지역을 제시한다 (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 제7조 2 항).
- ③ 지역 간 협력(interregional cooperation), 협력 네트워크(cooperation networks), 그리고 지역 간 경험의 상호 교환(exchange of experience)의 경우, EU 전역이 대상지역이 된다(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 제7조 3항과 제35조 3항).

ETC 목표가 적용되는 지역은 ERDF로부터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 4) 소결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2004년도에 EU에 가입한 10개국이 기존 15개 EU 회원국에 비해 발전수준이 낮음에 따라 EU 전체 1인당 GDP와 1인당 GNI가 하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기존 15개국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기금 할당액 감소라는 불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경과조치(예: Phasing-out region에 관한 규정)를 2007년~2013년의 구조기금에서 두고 있다. 게다가 2000년~2006년에 Objective 1의 대상 지역이었지만 개발을 통해 1인당 GDP가 EU 평균(기존 15개국 대상)이상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RCE 목표가 적용되는 Phasing-in region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과조치도 도입하였다.

## 4. 구조기금의 할당과 재정자원

### 1) EU 회원국 간 구조기금 할당

2007년~2013년 구조기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가 지역 및 국가에 할당하는 총 재정자원은 3080.41억 유로(2004년도 가격 기준)이다(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 제18조 1항; European Commission, 2006). 그 중 81.54%(약 2511억 유로)가 Convergence 목표에 할당되어 있고, 15.95%(약 491억 유로)는 RCE 목표에, 그리고 나머지 2.52%(약 77.5억 유로)는 ETC 목표에 할당되어 있다(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 제19조~제21조; European Commission 2006). 그리고 Convergence에 할당된 구조기금의 약 24.5%(약 615억 유로)는 2007년~2013년 기간 동안 구조기금에 흡수되어 집행될 예정인 결속기금에 해당된다.

구조기금(2007년~2013년)의 세 가지 목표 하에서 지원금이 지역 및 국가에 할당되는 공식은 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의 Annex II에 규정되어 있다. 그 규정을 통해 할당된 지원금을 EU 회원국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구조기금 할당 목표  

목표	2007년~2013년 총 할당액(억 유로)	2007년~2013년 평균 할당액(억 유로)
Convergence	2511	502.2
RCE	491	98.2
ETC	77.5	15.5
총 구조기금	3080.41	616.08

표에서 볼 수 있듯이, EU의 확대로 인해 2007년~2013년에 집행될 구조기금의 절반 이상(약 1578억 유로, 약 51.2%)이 기존 15개 회원국과 관련 지역 보다 발전수준이 낮은 2004년도 및 2007년도 신규 가입국 가와 관련 지역에 지원될 것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Convergence 목표 하에서 집행되는 결속기금은 15개국에 할당되어 있는데,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2004년 가입국 10개국과 2007년 가입국 2개국에 할당되어 있다. 이상의 12개국에 할당된 결속기금은 결속기금 총계의 85%(약 523억 유로)에 육박한다. 그리고 결속기금을 제외한, Convergence 목표에 제공되는 총 자금(표에서 Convergence와 Phasing-out에 해당) 중 52.7%(약 1000억 유로)가 신규로 가입한 12개국에 할당되어 있다.

표 1. 구조기금(2007년~2013년)의 EU 회원국별 할당액

	Convergence Objective			Regional Competitiveness & Employment Objective		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Objective	총계
	결속기금	Convergence	Phasing-out	Phasing-in	Regional Competitiveness & Employment		
벨기에			579		1,268	173	2,019
체코*	7,830	15,149			373	346	23,697
덴마크					453	92	545
독일		10,553	3,771		8,370	756	23,450
에스토니아*	1,019	1,992				47	3,058
그리스	3,289	8,379	5,779	584		186	18,217
스페인	3,250	18,727	1,434	4,495	3,133	497	31,536
프랑스		2,838			9,123	775	12,736
아일랜드				420	261	134	815
이탈리아		18,867	388	879	4,761	752	25,647
키프로스*	194			363		25	581
라트비아*	1,363	2,647				80	4,090
리투아니아*	2,034	3,965				97	6,097
룩셈부르크					45	13	58
헝가리*	7,589	12,654		1,865		344	22,452
말타*	252	495				14	761
네덜란드					1,477	220	1,696
오스트리아			159		914	228	1,301
폴란드*	19,562	39,486				650	59,698
포르투갈	2,722	15,240	254	407	436	88	19,147
슬로베니아*	1,239	2,407				93	3,739
슬로바키아*	3,433	6,231			399	202	10,264
핀란드				491	935	107	1,532
스웨덴					1,446	236	1,682
영국		2,436	158	883	5,349	642	9,468
불가리아**	2,015	3,873				159	6,047
루마니아**	5,769	11,143				404	17,317
미 할당						392	392
총계	61,558	177,083	12,521	10,385	38,742	7,750	308,041

단위: 백만 유로(2004년 물가 기준)

미 할당: 특정 회원국 또는 지역에 할당되지 않은 지원금

\* 2004년에 EU에 가입한 10개국 \*\* 2007년에 EU에 정식으로 가입

출처: European Commission(2006)

물론 2004년도에 EU에 가입한 10개국이 기존 회원국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2007년~2013년 구조기금이 여러 경과조치(예: Convergence 목표의 Phasing-out region)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2013년에 집행될 구조기금의 절반 이상이 2004년에 가입한 10개국과 2007년에 가입한 2개국에 할당되어 있어 기존 15개 회원국에 할당된 지원금 규모는 2000년~2006년과 비교해서 작아졌다고 볼 수 있다. 사실 2007년~2013년 기간에 기존 EU 15개국에 할당된 금액은 약 1498억 유로(2004년 가격 기준)로서 2000년~2006년 기간에 할당된 구조기금(결속기금 포함) 총액 2134.41억 유로(1999년 가격 기준)보다, 물가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다.

## 2) EU 구조기금의 재정자원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세 가지 목표의 EU 회원국별 구조기금 할당액은 ERDF, ESF, 결속기금(Cohesion Fund)으로부터 제공된다. 즉 ERDF, ESF, 결속기금은 구조기금(2007년~2013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되는 재정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ERDF는 구조기금의 세 가지 목표 모두에 자금을 제공한다. 그리고 ESF는 ETC 목표를 제외한 두 가지 목표에, 결속기금은 Convergence 목표에 자금을 제공한다(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 제4조; European Commission, 2006).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는 낙후지역의 개발 및 구조조정, 쇠퇴하는 산업집적지역의 전환(conversion), 접경지역 협력과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한다(Regulation (EC) No. 1080/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제2조). 즉 지역개발, 지역 경쟁력 제고, EU 내 지역 간 협력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연구개발, 혁신, 환경보호, 고용창출, 교통·통신 하부구조 투자 등에 우선순위를 둔다(Regulation (EC) No. 1080/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제3조~제6조; European Commission 2006).

ESF(European Social Fund)는 유럽고용전략(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EES)<sup>6)</sup>에 맞춰 집행되는데, 고용의 양적·질적 증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분야를 갖는다. 노동자 및 기업의 적응력 증대, 고용기회 및 노동시장에의 접근성 개선, 차별 금지와 사회적 약자의 노동시장 접근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강화, 고용과 사회통합 분야 개선을 위한 파트너십 장려이다(Regulation (EC) No. 1081/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제3조 1항; European Commission 2006). 그리고 ESF는 저발전 지역인 Convergence 목표가 적용되는 지역에 대해 이상의 네 가지 핵심 분야와 함께 인적자원 투자, 특히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 그리고 제도적 역량 개발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Regulation (EC) No. 1081/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제3조 2항).

결속기금은 환경 분야 프로젝트와 전유럽(trans-European) 교통망 구축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Treaty 제161조). 구체적으로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전유럽 교통망 구축과 함께, 각종 교통 하부구조, 교통수단간 연계 시스템 등이 결속기금의 지원분야가 된다(Council Regulation (EC) No. 1084/2006 제2조 1항). 이전에는 구조기금과 별도로 집행되는 기금으로서 개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으나 2007년~2013년 기간에는 구조기금에 흡수되어 ERDF와 ESF와 함께 Convergence 목표 하에서 이루어지는 다년간 투자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한다(European Commission 2006).

## 5. 맷음말

본고는 2007년~2013년에 집행될 EU 구조기금의

주요 특징을, 기금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 그러한 목표가 적용될 지역 및 국가의 요건, 회원국 간의 구조기금 할당, 구조기금 목표 달성을 활용되는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2000년~2006년의 구조기금이 세 개의 목표와 네 개의 커뮤니티 이니셔티브를 포괄했지만, 2007년~2013년의 구조기금은, 경제·사회적 결속 강화를 통한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EU 정책 목표의 큰 틀 내에서 이전 시기의 목표와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저발전 지역 개발 및 지역격차 완화, 지역의 경제·사회적 구조조정, 고용 창출 및 고용조건 개선, 지역 간 협력 등)을 대체로 계승하면서 Convergence,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이라는 세 개 목표로 통합시켰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고용창출, 성장,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명시·추구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둘째, 1994년부터 구조기금과 별도로 집행되어온 결속기금은 지원 대상 국가에서 전개되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했지만, 2007년~2013년에는 구조기금에 흡수되어 Convergence 목표 하에서 다년간 투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결속기금은 2007~2013년의 구조기금 Convergence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셋째, 2007년~2013년 구조기금은 2004년도에 EU에 가입한 10개국이 기존 회원국에 미치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비교적 저발전 국가인 10개국의 가입으로 인해 EU 전체 1인당 GDP와 1인당 GNI가 하락하게 되고 그에 따라 EU 확대 이전의 국가 및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Convergence 목표 대상 지역으로서 Phasing-out region을 포함시키는 등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07년~2013년 구조기금의 절반 이상이 2004년도 및 2007년도 신규 가입 국가에 할당되어 있어 기존 15개 회원국에 할당된 지원금은 2000년~2006년 기간에 비해 줄어들었다.

## 주

- 1) Treaty의 제158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order to promote its overall harmonious development, the Community shall develop and pursue its actions leading to the strengthening of its economic and social cohesion. In particular, the Community shall aim at reducing disparities between the levels of development of the various regions and the backwardness of the least favoured regions or islands, including rural areas.”
- 2) Treaty의 제159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mmunity's policies and actions ... shall take into account the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158 and shall contribute to their achievement. The Community shall also support the achievement of these objectives by the action it takes through *the Structural Funds* ...”
- 3) EU 정상 회의는 회원국 각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으로 구성되며, EU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다(Treaty 202조~203조).
- 4)里斯본 아젠다는 2000년 3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설정되었고, 201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EU의 전략적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 5) NUTS(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는 유럽통계청(European Office for Statistics; 즉 Eurostat)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통계를 생산할 목적으로 설정한 공간단위이며(<http://www.statistics.gov.uk/geography/nuts.asp>), NUTS 1, 2, 3의 세 개의 스케일을 갖는다. 1에서 3으로 갈수록 공간단위의 면적이 작아진다.
- 6) 유럽고용전략(EES)은 1997년 룩셈부르크(Luxembourg)에서 개최된 EU 정상회의 결정에 따라 시작되어 그 이후 계속 전개되고 있는 EU 차원의 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로서 회원국 간의 고용정책 조정을 토대로 EU 차원에서 공통된 고용전략을 수립하고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equal/index\\_en.cfm](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equal/index_en.cfm)). 또한 EES는 리스본 아젠다의 핵심요소로서 기능한다.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employment\\_strategy/index\\_en.htm](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employment_strategy/index_en.htm).

## 참고문헌

- Bachtler, John, Fiona Wishlade & Douglas Yuill, 2003, Regional Policies After 2006: Complementarity or Conflict?, *European Policy Paper* 50, European Policies Research Centre at University of Strathclyde.
- 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http://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offic/official/regulation/newregl0713\\_en.htm](http://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offic/official/regulation/newregl0713_en.htm)에서 구독가능)
- Council Regulation (EC) No. 1084/2006([http://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offic/official/regulation/newregl0713\\_en.htm](http://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offic/official/regulation/newregl0713_en.htm)에서 구독가능)
- Council Decision of 6 October 2006 on Community strategic guidelines on cohesion([http://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offic/2007/osc/l\\_29120061021en00110032.pdf](http://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offic/2007/osc/l_29120061021en00110032.pdf)에서 구독가능)
- European Commission, 2006, *Inforegio Factsheet* 2006 July([www.eu.europa.eu](http://www.eu.europa.eu)에서 구독가능).
- Regulation (EC) No. 1080/2006([http://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offic/official/regulation/newregl0713\\_en.htm](http://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offic/official/regulation/newregl0713_en.htm)에서 구독가능)
- Regulation (EC) No. 1081/2006([http://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offic/official/regulation/newregl0713\\_en.htm](http://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offic/official/regulation/newregl0713_en.htm)에서 구독가능)
- Regulation (EC) No. 1082/2006([http://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offic/official/regulation/newregl0713\\_en.htm](http://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offic/official/regulation/newregl0713_en.htm)에서 구독가능)
-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http://europa.eu.int/eur-lex/lex/en/treaties/index.htm>에서 구독가능)
- Treaty on European Union(<http://eur-lex.europa.eu/en/>

treaties/dat/11992M/htm/11992M.html에서 구독가능)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atlas/factsheets/pdf/fact\\_eu25\\_en.pdf](http://ec.europa.eu/regional_policy/atlas/factsheets/pdf/fact_eu25_en.pdf)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funds/prord/sf\\_en.htm](http://ec.europa.eu/regional_policy/funds/prord/sf_en.htm)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objective1/index\\_en.htm](http://ec.europa.eu/regional_policy/objective1/index_en.htm)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objective2/index\\_en.htm](http://ec.europa.eu/regional_policy/objective2/index_en.htm)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funds/prord/obj3\\_en.htm](http://ec.europa.eu/regional_policy/funds/prord/obj3_en.htm)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interreg3/index\\_en.htm](http://ec.europa.eu/regional_policy/interreg3/index_en.htm)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urban2/index\\_en.htm](http://ec.europa.eu/regional_policy/urban2/index_en.htm)  
[http://ec.europa.eu/agriculture/rur/leaderplus/index\\_en.htm](http://ec.europa.eu/agriculture/rur/leaderplus/index_en.htm)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equal/index\\_en.cfm](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equal/index_en.cfm)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esf2000/2007-2013\\_en.html](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esf2000/2007-2013_en.html)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employment\\_strategy/index\\_en.htm](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employment_strategy/index_en.htm)  
<http://www.statistics.gov.uk/geography/nuts.asp>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5/130&format=HTML&aged=1&language=EN&guiLanguage=en>

교신: 변필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국토 연구원, Tel: 031-380-0146, Fax: 031-380-0485, E-mail: drbyun@krihs.re.kr

Correspondence: Pillsung Byu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591-6 Gwanyang-dong,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712, Korea, Tel: 031-380-0146, Fax: 031-380-0485, E-mail: drbyun@krihs.re.kr

최초투고일 2007년 1월 12일  
최종접수일 2007년 2월 9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0, No.1, 2007(81~91)

## EU Structural Funds for the Period of 2007-2013

Pillsung Byun\*

**Abstract :** The European Union(EU) has implemented the Structural Funds since 1994, in order to achieve its harmonious development though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and social cohesion in the EU territory, and particularly to tackle regional disparities and to support backward regions in the territory. In the July of 2006, the Council of EU has finally laid down the provisions of the Structural Funds which is applied to the period of 2007–2013, having regard to the proposal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ass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Given this context, this work deals with the features of the Structural Funds(2007–2013), focusing on the funds' objectives, the regions and countries under the application of such objectives, allocation of the funds among the EU Member States, and the funds' financial resources.

**Keywords :** cohesion, EU, Structural Funds

---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